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436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 종결 2019. 3. 8

판결선 고 2019. 3. 2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14039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B 및 선정자 A에게 천안시 동남구 AA 답 1, 2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 25지분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법률상 배우자망 E과 사이에 선정자 A, 피고, 원고, 소외 F, G를 자녀 로 두었는데, 망 D는 2013. 1. 8., 망 E은 2013. 7. 18.에 각 사망하였다.

나. I은 망 D, 원고, 피고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부동산의 토지대장 에는 I이 1996. 7.

5. 망 D에게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후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19. I명의 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가, 2014 . 7. 18. 에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부동산은 망 D가 I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피고 가 I으로부터 명의 수탁자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부동산중 각 상속 지분에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소장부분송달 일자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망 D가 1996년 경고향인 천안시 동남구 AC리에 내려가 살고싶다고 하여 피고가I으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500만원에 구입하여망 D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D 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농지매각명령을 받게 되자 1998 . 10. 19. I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다시 매도 하였고, 피고가 2014년 경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자I으로부터 또다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부동산은 망 D가 I에게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 3판결 등 참조),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그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그토지에 대한 수익의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판결 등 참조).

나. 위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기초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 D가 이 사건부동산을 I 및 그를 이어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망 D가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판사 이의석 판사 이준현

별지